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의무화 등〉

■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55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의무화 등 ..... | 3  |
| ※ 참고자료 .....                              | 11 |
| 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                  | 11 |
| 2.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 14 |

## I. 제안경위

2024년 6월 19일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 중장기감축목표·부문별감축목표·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을 수립·변경하거나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는 해당 절차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 민주성 확보를 위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등).

### III. 검토의견

#### 1.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의무화 등

개정안은 ① 국가전략 수립·변경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②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안 제7조제6항 신설),

③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시행령에 규정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규정(안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신설)하는 한편, ④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후단 신설).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br>~ ⑤ (생략)<br><u>&lt;신설&gt;</u> |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br>~ ⑤ (현행과 같음)<br><u>⑥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 |

| 현행                                                                                                                                                                                       | 개정안                                                                                                                                                                                                                                                                                                                                                                                              |
|------------------------------------------------------------------------------------------------------------------------------------------------------------------------------------------|--------------------------------------------------------------------------------------------------------------------------------------------------------------------------------------------------------------------------------------------------------------------------------------------------------------------------------------------------------------------------------------------------|
| <p>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전략의 내용 및 수립·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생략)</p> <p><u>&lt;신설&gt;</u></p> <p>③ (생략)</p> <p>④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p> | <p><u>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u></p> <p>⑦ -----제6항-----</p> <p>-----</p> <p>-----</p> <p>-----</p> <p>-.</p> <p>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 -----</p> |

| 현행                                                                                                                                                                                                                                                                                      | 개정안                                                                                                                                                                                                                                                                                                                                                                                                                                                                                                                                                             |
|-----------------------------------------------------------------------------------------------------------------------------------------------------------------------------------------------------------------------------------------------------------------------------------------|-----------------------------------------------------------------------------------------------------------------------------------------------------------------------------------------------------------------------------------------------------------------------------------------------------------------------------------------------------------------------------------------------------------------------------------------------------------------------------------------------------------------------------------------------------------------|
| <p>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u> &lt;후단 신설&gt;</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p> <p>①·② (생략)</p> <p>&lt;신설&gt;</p> <p>③ ~ ⑤ (생략)</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p> | <p>-----<br/>-----<u>원활한 업무수행</u><br/>을 위하여 <u>관계 중앙행정기관</u><br/><u>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u><br/><u>을 요구할 수 있다.</u> <u>이 경우 관</u><br/><u>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u><br/><u>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u><br/><u>협조하여야 한다.</u></p> <p>⑥ -----<u>제4항</u>-----<br/>-----<br/>-----<br/>-----<br/>---</p> <p>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u><br/><u>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u><br/><u>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u><br/><u>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u><br/><u>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u><br/><u>노력하여야 한다.</u></p> <p>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p>⑦ -----<u>제6항</u>-----</p> |

| 현행                                                                                                                                                                                                                                                                                                                                                                                                                    | 개정안                                                                                                                                                                                                                                                                                                                                                                           |
|-----------------------------------------------------------------------------------------------------------------------------------------------------------------------------------------------------------------------------------------------------------------------------------------------------------------------------------------------------------------------------------------------------------------------|-------------------------------------------------------------------------------------------------------------------------------------------------------------------------------------------------------------------------------------------------------------------------------------------------------------------------------------------------------------------------------|
| <p>정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제출·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u>제11조제2항·제3항</u>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p> <p>③ ~ ⑤ (생략)</p> <p>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생략)</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u>제11조제3항</u>(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p> | <p>-----</p> <p>-----</p> <p>-----</p> <p>-----.</p> <p>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u>제11조제2항</u><br/><u>부터 4항까지</u>를-----.</p> <p>-----</p> <p>-----.</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u>제11조제4항</u>-----</p> <p>-----</p> <p>-----</p> <p>-----</p> <p>-----</p> |

| 현행            | 개정안    |
|---------------|--------|
|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 |

첫째, 현행법 제7조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에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sup>1)</sup>.

그런데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의 경우와 같이 국가전략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근거 및 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 제7조제6항은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근거 및 업무 관련 자료 제출 요구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실효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가전략을 수립·변경하거나<sup>2)</sup>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변경하는<sup>3)</sup>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절차

1) **시행령 제2조(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탄소중립국가전략”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③ 정부는 국가전략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0조의 국가기본계획 및 제11조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변경에 있어서는 공청회 절차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다만,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경우 공청회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sup>4)</sup>, 시·도계획의 수립·변경시에는 공청회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안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은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변경도 국가전략 및 중장기감축목표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변경시에 공청회 절차를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서울시는 안 제11조의 시·도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sup>5)</sup>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시·도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절차적 민주성 제고 및 공정성

---

4) **시행령 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시행령 제6조(탄소중립시·도계획의 수립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유사 입법례<sup>6)</sup>에서도 시·도지사 등이 계획 수립 시 민간 단체,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법 제10조<sup>7)</sup>는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지원에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보다 명확한 협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 제10조제5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6)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계획」 제7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7) 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
|--------------|
| 문 의 처        |
| 02)6788-5533 |

## ※ 참고자료

### 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자료: 환경부

#### 1 국가 전략 체계도



## ② 4대 전략 · 12대 추진과제

### ①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 ① **(원전 + 재생e 조화)** 원전 확대 및 재생e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新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 전원믹스 합리화
  - \* 원전 :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운영허가 만료 원전(~'30년 10기)의 계속 운전
  - 석탄발전 : '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 폐지(現 석탄발전 57기 운영 중)
- ② **(산업구조 전환)** 세액공제·금융 등 총력지원을 통해 공정전환 및 순환경제 활성화로 ①연·원료 → ②공정 → ③제품 → ④재활용 전과정에서 탄소중립 실현
  -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이차보전, 산은·신한, '22~),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등
- ③ **(국토의 저탄소화)**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모빌리티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산림·해양·습지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 전 국토의 저탄소화 추진
  - \*\* 수소·전기차 보급률 : ('21) 1.0% → ('30) 16.6%(450만대) → ('50) 85%~97%

### ②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 ① **(기술혁신·규제개선)** 기후기술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전과정 관리, 전문인력 양성,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 \* 한국형 100대 핵심기술 도출 → 분야별 R&D 로드맵 수립
- ② **(핵심산업 육성)**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수출 산업화, 무공해차·재생e·수소산업·CCUS 육성 등 미래시장 선도
  -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한 수주 지원 및 대상국별 맞춤형 수주전략 추진
  - \*\* 전기차 : (1회 충전 주행거리) 現 500km → ('25) 600km, (충전속도) 現 18분 → ('30) 5분
  - 수소상용차 : (내구성) 現 30만km → ('30) 80만km, (연비) 現 13km/kg → ('30) 17km/kg
  - \*\*\* CCUS 전담법 제정 추진 및 동해 가스전 활용 연 40만톤 규모 CCS 실증 인프라 구축
- ③ **(재정지원·투자확대)**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지원 및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 투자 활성화,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등으로 탄소중립 정책 뒷받침
  - \* 유상할당·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ETS 개선, 배출권시장 참여자 단계적 확대 등 시장 활성화

### ③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 ① **(에너지소비절감)** 에너지 수요효율화 및 제도 개혁,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국민 인식 제고 및 소통 확대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
  - \* △산업 : 多소비 기업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 추진, 대기전력저감·효율등급제 등 효율관리제도 효과 제고
  - △가정·건물 : 에너지캐쉬백 가입 촉진, △수송 : 전비 등급제·중대형 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 ② **(지방 중심)**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단위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수립·추진 내실화
  - \* 지역 맞춤형 : 대도시 집중형(서울, 대전), 산업발전 특화형(충남, 전남), 복합형(경기, 부산)
  - \*\*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 지방위원회 구성,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이행체계 구축
- ③ **(산업·일자리 전환)** 입·이직 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업종 발굴·진단 및 직무훈련 제공, 기후창업 등 근로자·기업·지역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
  - \* 산업전환에 대응한 훈련과정 공급, 공동훈련센터 구축 등 훈련 인프라 확대
  - \*\* '30년까지 내연기관 부품기업 중 1,200개社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 목표

### ④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 ① **(기후적응기반 구축)** 적응주체별 협력 및 기후위험 예측력을 강화하고, 재난대응 인프라 확대와 기술개발 등 사회 전반의 적응능력 제고
  - \*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구축 및 관계부처 적응협의체 운영, 취약계층 지원 강화
  - \*\* AI 홍수경보, 산불·산사태 조기경보 등 기후위기 감시 인프라 확대
  - \*\*\* 대심도 빗물터널 추가설치, 수원·대체수자원 확보, 이상기온 대응 품종 개발
- ② **(국제사회 선도)**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기후대응 연대를 강화하고, 그린 ODA 및 국제감축사업 등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
  - \* '25년까지 그린 ODA 사업 비중을 OECD 수준으로 확대
- ③ **(이행관리)** 과제별 정량지표 선정 등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 이행관리 및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실천

## 2.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자료: 환경부

### 1 국가 기본계획 체계도



## 2 부문별 감축대책

### 1 [전환] 원전·재생e 보급 가속화 및 시장기반 수요효율화

- (에너지전환) 석탄발전 감축('36년까지 28기 폐지), 원전 계속 건설(신한울 3·4호기), 재생e 확대(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 (수요효율화) 산업·건물·수송 등 수요효율화 혁신을 추진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요금 체계\* 구축

\* 총괄원가 보상원칙 및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 2 [산업] 탄소중립을 기회로,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 기술혁신펀드(~'24년, 1조원) 등을 통해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등 탄소저감 보조·용자 확대

\*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여 감축투자 유도

-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을 통해 기업의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제도 이행 유연성\*\* 및 감축설비지원 확대로 기업 부담 완화

\* 유상할당 비율상향 및 대상확대,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 확대(전체 배출량 75% 이상, '26~)

\*\* 국가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 수준의 배출권 이월·상쇄 한도 조정 검토

### 3 [건물] 기준 강화 및 성능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 (건물혁신) 신축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확대하고, 기축그린리모델링을 확산\*

\*\*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와 연계하여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마련('24)

- (효율향상) 건물 효율 평가관리\*와 건물 성능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효율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부문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23)

\*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효율목표를 부여하고 미달성시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 4 [수송] 육상·해양·항공 모빌리티 전반의 탄소중립화

- (무공해차)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충전인프라 확충\* 등 전환 가속화

\* '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 전기차충전기 123만기 구축 등

- (수요관리) 내연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상향하고, 대중교통 등 활성화\*

\* 대중교통 인센티브(환승할인, 요금제 등) 다양화, 개인형이동수단(PM)·자전거의 접근성 강화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 실현**

- (농축산) 스마트 농축산업을 확산하고, 저탄소 기술을 적극 보급
  - \* 스마트팜 보급(~'27년 온실 10,000ha, 축사 11,000호), 저메탄사료 보급(~'30년 30%)
- (수산)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및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

**⑥ [폐기물] 사회·경제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 완성**

- (폐기물 감량) 자원효율등급제(제품 생산 단계에서 평가 및 정보제공)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 원천 감량
- (재활용 확대) 공공책임수거 도입 및 태양광 폐패널·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 \* 생활/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 ('21) 56.7%/84.4% → ('30) 83%/92.5%

**⑦ [수소]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 도약**

- (생산·활용)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 및 수소액화 플랜트·수소 배관망 등 인프라 구축
- (생태계) 수소 모빌리티 다양화 및 수소 클러스터·수소 도시 지정

**⑧ [흡수원] 흡수원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탄소 흡수량 증대**

- (산림) 산림순환경영, 목재수확 확대\* 등을 통한 흡수기능 강화
  - \* 숲가꾸기('20년 217천ha → '50년 480천ha), 국산목재생산('20년 460만m<sup>3</sup> → '50년 800만m<sup>3</sup>)
- (습지 등) 내륙·연안습지를 복원·보호하고, 도시숲 등 신규흡수원 확충\*
  - \* '50년까지 갯벌 복원 ('22)1.5km<sup>2</sup> → ('50)30km<sup>2</sup>, 도시숲 1.7만ha 조성

**⑨ [CCUS] 인프라·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

- (기반) CCUS법 제정 및 동해 가스전 활용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
- (기술개발) CCUS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⑩ [국제감축] 적극적 사업 발굴과 신속한 추진으로 전지구적 감축 기여**

- (기반구축) 국제감축사업의 승인·취득·실적관리 등 이행기반 마련
- (사업발굴) 주요국과 협정을 조기 체결하고, 부문별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

### 3 이행기반 강화대책

#### 1 [기후적응] 과학과 참여에 기반한 지속가능 적응사회 실현

- (감시·적응기반) 지상관측망·위성을 활용하여 입체적 감시를 강화하고, 기후 적응 법적 기반 강화 및 정보 제공 일원화를 위한 종합플랫폼 구축
- (극한기후 대응) AI 활용 홍수 예보시간을 단축\*하고, 범부처 피해예방 대응
  - \* 홍수 경보시간 단축(3시간전 → 6시간전), 특보지점 확대('22년 75 → '27년 223개소)
- (기술개발) ①기후위기 기인 감염병 대응 기술, ②기후적응형 농업기술 개발·보급, ③기후변화 영향 사전예측 등 적응기술 개발 추진
- (취약계층)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 \* 노인 맞춤형돌봄 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환경보건이동학교 운영 등

#### 2 [녹색성장] 기술·산업 혁신을 통한 환경과 성장의 공존

- (녹색기술) 한국형 100대 핵심기술\*을 지속 육성하고, 범부처 R&D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전과정(기획~상용화) 관리 강화
  - \* 에너지전환(29개), 산업·CCUS(48개), 건물(9개), 수송(9개), 환경(5개) 등
- (녹색산업)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및 에너지신산업 성장 지원\*
  - \* 차세대 이차전자·반도체·바이오소재 등 기술 개발, 공급망 구축, 제품인증, 수요처 확대 등
- (재정·금융) 기후대응기금('23년 2.49조원)·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경정보 공개 대상기업을 단계적 확대\*
  - \*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범위 : ('22) 자산총액 2조원 → ('30) 쉐 코스피 상장사

#### 3 [정의로운 전환] 기업·노동자·지역의 행복한 전환을 위한 세심한 지원

- (제도) 피해 우려 근로자·기업·지역 대상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민관 협업을 통해 기후테크 육성 전략 마련
- (영향집단 지원) 산업전환에 따른 기업손실 최소화, 노동자 전직 훈련프로그램\*, 저탄소 농업활동 추가비용 지원 등 추진
  -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비용지원, 전직지원 서비스 실비 지원 등
- (지역) 산업·고용 위기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컨설팅 등 추진
  - \* 기업·소상공인의 고용안정, 실업예방 및 재취업촉진, 신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등

#### 4 [지역주도] 지역이 끌고 중앙이 밀어주는 풀뿌리 탄소중립

- **(기반구축)**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중앙-지방간 역할분담·협력체계를 구축
  - \* '22년 17개(광역) → '23년 37개(광역 17, 기초 20) → '27년 누적 100개소 설치·운영
- **(역량강화)** 국가 탄소수지 지도\*를 구축하여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지역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기후대응 역량 강화
  - \* 국가 배출원 전분야(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LULUCF, 폐기물), 1km x 1km 단위
- **(소통·협력)** 지역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정기포럼 등 상호협력 활성화

#### ⑤ [인력·인식제고] 국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참여형 탄소중립사회 실현

- **(인력양성)** 기후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확대\* 등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에너지·미래차 등)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 첨단분야 학과개설요건 유연화, 폴리텍대학 저탄소분야 학과 신설(~'26년, 연간 5개과)
- **(인식제고)** 교육과정내 탄소중립 내용을 강화하고, 쌍방향 소통 플랫폼 구축 및 인센티브 확대 등 범국민 실천운동 확산\*
  - \*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탄소중립마을 조성,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강화 등

#### ⑥ [국제협력] 국제사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선도

- **(양·다자협력)**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新경제체제에 대응하고, P4G 등 민간협력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입지 강화
- **(그린ODA)** 그린분야 비중 확대\*로 국내 환경산업 진출 및 국제감축에 기여
  - \* 전체 ODA 중 그린 ODA 비중을 '25년까지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대

### 4 이행·환류체계

- **(협의체 운영)** 범부처 상설 협의체 발족·운영으로 핵심과제 공동 진행
- **(이행점검)** 청년·미래세대 등이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 구축·운영
  - \* 점검절차 : ①탄녹위 점검계획 수립 → ②소관부처의 이행실적 제출 → ③종합보고서 작성 → ④결과보고 및 대국민 공개(매년 12월까지 완료)